

의안번호	제 498 호
의결연월일	. . . (제 회)

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발의자	이상욱 의원 등 8인
발의연월일	2020년 8월 26일

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이상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8
------------	-----

발의연월일 : 2020년 8월 26일
발의자 : 이상욱, 박형용, 이숙애
이의영, 장선배, 허창원
박상돈, 이옥규

1. 제안이유

- 충청북도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지사의 책무,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도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제5조)
-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 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함. (안 제6조, 제7조)
- 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업무 지원을 위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
- 라. 감염병 표본감시 관련 사항 및 역학조사에 대해 규정함. (안 제9조, 제10조)
- 마.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 시행과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감염병 위기 시 추가 관리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 바. 정당한 사유없이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 관리시설 평가 및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 사.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및 감염병환자 등 및 격리자의 입원 · 격리 통지에 대해 규정함. (안 제17조, 제18조)
- 아.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및 방역소독 실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9조, 제20조)

- 자. 감염병의 예방 조치 및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21조, 제22조)
- 차. 방역관·역학조사관·검역위원을 두어 감염병의 예방, 방역, 역학조사 및 검역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23조)
- 카. 감염병 발생 감시, 예방·관리, 치료 및 역학조사 업무 등에 협조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관계요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입원·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 (안 제24조)
- 타. 감염병 관리시설 사용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규정함. (안 제25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0-63호
- 다. 협의 : 보건정책과
- 라.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조례 제호

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도민이 성별, 장애, 나이,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정부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행정명령 및 도지사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도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도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도지사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의료기관에서 법 제2조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도지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도지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실태 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를 따른다.

제8조(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감염병관리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감염병관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 개발, 조사, 분석 및 관리 정책 개발
 2. 감염병 대응 교육 · 훈련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홍보
 3. 감염병 관련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 및 정보 제공
 5.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6.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
 7. 도내 의료기관 의료감염관리 활동 전략 수립
 8. 공중보건위기(신종감염병, 생물테러 등) 대응 훈련 관한 사항
 9. 도내 감염병 취약 집단별 맞춤형 교육 · 훈련
 10.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소재 종합 병원 또는 의과대학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 ·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감염병 표본 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도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 · 단체 · 시설 또는 도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역학조사)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법 제18 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역학조사를 위하여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도지사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역학조사 실시 요청을 받은 경우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충청북도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 및 위기상황의 판단, 위기경보 관리체계
3. 감염병 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
4. 대량 의료 지원 등에 필요한 의료용품의 비축 및 조달 방안
5. 재난 및 위기상황별 도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훈련·홍보 방안
6. 그 밖에 재난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 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1조의 설치 기준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 관리기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 등”이라 한다)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15조(감염병 관리시설 평가)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의2 및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운영비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의3에 따라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환자 등의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환자 등의 접촉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접촉자 격리시설만으로 접촉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라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도지사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2조 제15의2호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2.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를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진찰이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하며,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도지사는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 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18조(감염병환자 등 및 격리자의 입원·격리 통지) 도지사는 감염병환자 등이 입원 치료 또는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도지사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방역소독 실시 권고) ① 도지사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다수가 이용하여 공중위생상 소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해당지역 시장·군수에게 소독 실시를 권고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1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방역관·역학조사관·검역위원) ① 도지사는 법 제60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60조의2에 따라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 소속 공무원으로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 이 경우 역학조사관 중 1명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61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역위원을 두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별히 필요하면 운송수단 등을 검역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지원) ① 도지사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협조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 유행기간 중 감염병의 치료를 위해 의료인·의료업자·의료관계요원 등을 동원한 경우 해당 의료인 또는 그 의료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수당·치료비 또는 조제료 등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41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필품, 긴급복지 지원
2. 입원·격리자 자녀의 보육·아이돌봄서비스 지원
3. 입원·격리자 자녀의 급식 지원
4. 감염병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5. 자가격리 중 폐기물 처리 전용봉투 및 소독약품 지원
6. 자가격리자, 유가족 등 심리서비스 지원
7. 자가격리자 병원이송 및 생활불편 도움 지원
8. 자가격리자 중 시설격리를 원하는 경우 시설격리 조치
9. 그 밖에 입원·격리자에게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원

제25조(손실 보상) ① 도지사는 법 제7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법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은 시행령 제28조를 따른다.

제26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도 홈페이지 등에서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시 위생수칙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 관련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으며, 올바른 보건위생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제27조(포상) ①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 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11.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시·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39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감독·지원의 내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① 시·도지사는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접촉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접촉자 격리시설만으로 접촉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1. 제1급감염병
2.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3. 삭제
4. 제3급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5.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일시적 폐쇄
 -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 · 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 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 · 이동을 제한 · 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 · 항공기 · 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 · 하수도 · 우물 · 쓰레기장 · 화장실의 신설 · 개조 · 변경 · 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 · 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 · 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제60조(방역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 ·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60조의2(역학조사관) ①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100명 이상, 시 · 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시 · 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61조(검역위원) ①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검역위원을 두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별히 필요하면 운송수단 등을 검역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운영 등)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감염병사업지원기구를 둔다.

②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1. 「의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감염병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감염병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역학조사 및 방역 분야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관리사업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는 매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료수집, 조사, 분석 및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국내외 협력사업의 추진에 따른 여비 및 수당 등의 경비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⑦ 시·도감염병사업지원기구의 구성원 위촉, 자료제출 요청, 활동현황 보고 및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는 “시·도감염병사업지원기구“로 본다.

제15조(역학조사반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시·도에 시·도역학조사반을 두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역학조사반을 둔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
 - 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중 보건의료원
 - 나. 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기관
 - 다. 의료기관 중 소아과·내과·가정의학과·이비인후과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
2. 제4급감염병 중 기생충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 다음 각 목의 기관·시설·단

체 또는 법인

- 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나. 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 · 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기관
- 다. 의료기관 중 의원 · 병원 및 종합병원
- 라. 기생충감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
- 마. 기생충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3. 제4급감염병(인플루엔자 및 기생충감염병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음 각 목의 기관 · 시설 · 단체 또는 법인

 - 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나. 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 · 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기관
 - 다. 의료기관 중 의원 · 병원 및 종합병원
 - 라. 기생충감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
 - 마. 기생충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표본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 2. 그 밖에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신고 실적이 없는 등 질병관리본부장이 표본감시기관으로서 표본감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삭제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 가. 「의료법」 제4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두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나.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인력 · 장비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
- 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 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교육 및 감염예방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감염병 실태조사

- 가. 감염병환자등의 연령별 · 성별 · 지역별 분포 등에 관한 사항

- 나. 감염병환자등의 임상적 증상 및 경과 등에 관한 사항
- 다. 감염병환자등의 진단·검사·처방 등 진료정보에 관한 사항
- 라. 감염병의 진료 및 연구와 관련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 마. 감염병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 바. 그 밖에 감염병의 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내성균 실태조사

- 가. 항생제 사용 실태에 관한 사항
- 나. 내성균의 유형 및 발생경로 등에 관한 사항
- 다. 내성균의 연구와 관련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 라. 내성균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내성균의 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1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2항 후단 및 법 제3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1. 감염병관리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별표 4의2의 기준에 적합한 음압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 나. 30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2. 격리소·요양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출 것

3. 진료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일 것

제31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① 법 제39조의2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정기적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관리시설의 시설기준 적합성
2. 감염병관리시설의 근무인력 적정성
3. 감염병관리시설의 진료 및 운영실적
4. 그 밖에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을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9조의2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정기적 평가는 모든 감염병관리시설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서면평가 결과 추가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본부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본부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 실시일,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일정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평가실시일 및 평가항목: 평가실시일 90일 전
2. 세부 평가일정: 평가실시일 7일 전

⑤ 질병관리본부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질병관리본부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운영비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방법, 평가절차 및 지도 · 감독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 한다.

제35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감염병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

증후군(MERS) 등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흡기감염병으로 한다.

②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만65세 이상의 노인
2. 임신부 및 기저질환자

③ 질병관리본부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마스크 등을 관할 보건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 마. 종합병원

1. 사업개요

- 감염병 감시, 예방 및 관리, 치료 등의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의사 결정으로 충청북도민의 건강증진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 관리비
- 감염병 입원 및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제25조(지원)
- 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제27조(충청북도 감염병관리위원회)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충청북도 감염병 관리지원단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며 추계기간은 2020.7. 31부터 2024년까지 4년 6개월로 함
- 충청북도 감염병 관리지원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일반관리비 등은 민간위탁 사무 범위내에서 재정지원함
- 감염병 입원 및 격리된 사람에 대한 치료비 지원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2,856,000	406,000	612,500	612,500	612,500	612,500
감염병관리 지원단운영	민간위탁	2,700,000	300,000	600,000	600,000	600,000
감염병 격리치료비	의료 및 구료비	146,000	106,000	10,000	10,000	10,000
감염병관리위 위원회	위원회수당	10,000	-	2,500	2,500	2,500

※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고보조 및 자체재원 매칭 사업으로 추진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203,000	305,000	305,000	305,000	305,000	1,423,000
국고 보조 금	감염병관리 지원단	15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350,000
	감염병격리 치료비	53,000	5,000	5,000	5,000	5,000	73,000
세 출		406,000	612,500	612,500	612,500	612,500	2,856,000
세출	감염병관리 지원단	3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2,700,000
	감염병격리 치료비	106,000	10,000	10,000	10,000	10,000	146,000
	감염병관리 위원회수당	-	2,500	2,500	2,500	2,500	10,000
재원 조달		406,000	612,500	612,500	612,500	612,500	2,856,000
의조 재원	소 계	203,000	305,000	305,000	305,000	305,000	1,423,000
	보조금	203,000	305,000	305,000	305,000	305,000	1,423,000
자체 수입	소 계	203,000	307,500	307,500	307,500	307,500	1,433,000
	지방세	203,000	307,500	307,500	307,500	307,500	1,433,000
특별교부세							
시군비							
기 타							